



##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

### 교습비등 반환기준 (제 18 조제 3 항 관련)

구분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	
	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*의 전액
제 18 조 제 2 항 제 3 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	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*의 2/3 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*의 1/2 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*의 전액
	교습기간이 1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* (교습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*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	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*의 전액

\*교습비는 강좌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를 포함함.